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910호 2025. 3. 24.(월)

## 차 례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50호 석남역 석남동 49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 변경)인가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51호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고시 ————— 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5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5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654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 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694호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공매 또는 폐차) 예정(알림) 공고 ————— 16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5-50호

## 석남역 석남동 49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 변경)인가 고시

석남역 석남동 49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경미한 변경)인가 신고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 3.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류: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나. 명칭: 석남역 석남동 49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0-1번지 일원
- 나. 면적: 3,616.2㎡

###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일: 미정
- 나. 준공예정일: 미정

###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가. 조합명칭: 석남역 석남동 49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유는)

나. 사무소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23번길 12-4, 상가건물 204호

5.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 내용

- 권리 이전 등으로 인한 조합원 변경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5-51호

##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2-39(2022. 3. 18.)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우리 구 석남동 588-8번지 외 2필지 일원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3.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소규모재건축사업
- 나. 명 칭: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88-8번지 외 2필지
- 나. 면 적: 3,033.3m<sup>2</sup>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시행자명	대표자	주소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	윤재희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 61(석남동)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2019. 9. 1. ~ 2027. 2. 28.(91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22. 3. 18.

6.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m <sup>2</sup> )	3,033.3	건축면적(m <sup>2</sup> )	1,080.8217
건축연면적(m <sup>2</sup> )	10,169.5672	건폐율(%)	35.63
용적률(%)	249.96	건축물의 높이(m)	55.8
건축물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규모	지하1층, 지상19층

7.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공동주택(아파트) 1개동 91세대(지하1층 ~ 지상19층)

8. 변경의 사유 및 내용

가. 변경사유: 공사비 등 상승에 따른 정비사업비 변경 및 시공사 변경

나. 주요 변경내용

1) 정비사업비 변경: 당초 23,138,697,300원

변경 44,026,250,500원

2) 시공사 변경: 당초 이강건설(주)

변경 다우건설(주)

소관부서	주택과	담당자 직 성명	주무관 최종락	전화번호	032-560-4594
------	-----	-------------	------------	------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5-52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3. 24.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청동로 114 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5.3.24.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5-03-24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116	인천광역시 서구 청동로 114 (청라동)	20101111	청라대로 동쪽에 위치	
2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0	인천광역시 서구 목지로 36 (불로동)	20210913	목지마을의 자연지명을 반영	
3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0	인천광역시 서구 동화사로 86 (불로동)	20200420	갈산과 목지를 잇는 고개 아래 끝의 이름을 따 명명	
4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0, 불로동 035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 222 (원당동)	20220221	고산후라는 자연부락의 이름을 따 명명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5-03-24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완창로188번2길 9 (마전동)	건물멸실	20081231	완창로188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두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654호

##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3.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2. 개정이유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화재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화재공제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 제4조의2에 다음과 같이 신설

-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상인 및 상인조직이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4.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경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3382, 팩스 032-560-273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화재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제4조의2에 다음과 같이 신설

-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상인 및 상인조직이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상인  
및 상인조직이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 공제료의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u>&lt;신 설&gt;</u>	제4조의2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 구청장은 <u>법 제24조의2에 따라 상인 및 상인조직이 화재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①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0.>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지원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공제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9. 20.>

[본조신설 2016. 3. 29.]

[제목개정 2024. 9. 20.]

[시행일: 2025. 3. 21.] 제24조의2

#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li> <li>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li> <li>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li> </ol>
-----	--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자동차 강제처리(공매 또는 폐차) 예정(알림) 공고

우리 구 무료 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장기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8조의2,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강제 견인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서구청 주차관리과로 오셔서 소요된 제비용(견인료, 보관료 등)을 납부하시고 차량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 규정에 따라서 강제처리(공매 및 폐차)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 3.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명 :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차량 강제처리(공매 또는 폐차) 예정  
(알림) 공고
2. 공고기간 : 2025. 3. 24.(월) ~ 2025. 4. 25.(금).
3. 강제처리일시 : 공고기간 이후
4. 공고대상차량 : [붙임] 참조
5. 소유(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가. 대상차량의 소유자(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나.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2 제2항, 제3항 및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공매 또는 폐차)되며,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서 강제처리(폐차) 예정이며, 일체의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